

중소기업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안건

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2013 - 1 호 |
| 의 결 연월일 | 2013. 1. 31. (제 1 회) |

의 결
사 항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(안)
신 설·강 화 규 제 심 사 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중소기업청장 송종호 |
| 제출연월일 | 2013. 1. . |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규제 심사(안) 개요 | 1 |
| □ 요약 | 1 |
| II. 규제 심사안 | 1 |
| 1.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| 1 |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□ 요약

| 규제 사무명 | 현행 규제내용 | 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 |
|--|-------------------|--|
| <p>1.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중소기업 지원센터 지정 취소</p> | <p><신설></p> | <p>○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기준 등 근거 신설</p> <p>⇒ (사유)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 필요. 또한 정부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센터운영이 3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부적절한 경우 취소 필요</p> |

II. 규제심사안

1.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
㉠ 규제심사 내용

□ (도입배경)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윤리경영, 환경, 인권의 보호 등

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,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

- **(추진방안)**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무역장벽과 연계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, 중소기업은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·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·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**(주요내용)** 글로벌 무역장벽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·확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,
 -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신설

<조문 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제54조의5(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법 제62조의6제5항에 따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</u></p> |

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비영리법인일 것

2.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회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

3. 중소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
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

<신 설>

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54조의6(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

지원센터의 지정취소) ① 중소기업

업청장은 법 제62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제54조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

② 규제영향분석서

1. 분석대상 규제개요

| 규제사무명 등 | 등록번호 | 미등록 | | 구분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등록단위 | 주규제 | 부수규제 | 신설 | ○ | 강화 | | 내용 심사 | | 존속 기한 연장 | | | | | | |
| | | ○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지원센터 지정·취 소 조항 신설 | | | 경제적 규제 | | 사회적 규제 | | | 행정적 규제 | ○ | | | | | | |
|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판로정책과 경영판로국장 김홍빈, 판로정책과장 신기룡 (042-481-4374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| 유형 | | 의견수렴 방식 | | | | 의견내용 | | | | | | | | | |
| | 피규제자 | 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 | 행정예고 (‘12.12.28~‘13.1.17) | | | | 없음 | | | | | | | | | |
| | 이해관계자 | 중소기업 | 행정예고 (‘12.12.28~‘13.1.17) | | | | 없음 | | | | | | | | | |
| | 관련 부처 | 지식경제부 등 | 관련부처 의견조회 (‘12.12.18~‘12.12.27) | | | | 없음 | | | | | | | | | |
| 규제존속기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련 법률인 『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이 한시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현행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설 규제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요건으로 1)거짓 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, 2)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, 3) 제54조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규제체계도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</td> <td rowspan="2" style="font-size: 2em; vertical-align: middle;">→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 취소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비영리법인 → 중소기업청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중소기업청 → 중소기업지원센터</td> </tr> </table> | | | | | | | | | | |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 | → |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 취소 | 비영리법인 → 중소기업청 | 중소기업청 → 중소기업지원센터 |
|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 | → |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 취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비영리법인 → 중소기업청 | | 중소기업청 → 중소기업지원센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2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(1) 규제의 필요성

1-1. 문제 정의

- 정부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확산과 지원을 위해 지정된 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부당한 지정을 받은 경우이거나 주어진 역할을 명백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정을 취소

1-2.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□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『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62조6제5항에서 지정한 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3개월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진행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
- 관련 정책이 수행되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

□ 해외 사례 : 없음

(2)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□ 대안 검토

- 책임경영기업지원센터의 필요적 지정취소 사유의 각각 조항을 살펴 보면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, 2.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, 3. 제54조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업무 정상화 및 취소사유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취소 유예기간을 필수요

건으로 규정(규제 대안 없음)

□ 비용·편익 분석

- (비용)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- (편익)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, 중소기업은 질적수준이 높고 체계화된 교육·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음

(3)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

3-1 규제의 적정성

-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교육, 컨설팅지원의 성과제고 필요
- 지원센터가 지정된 이후 본연의 업무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두어 업무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 규제수준은 적정

3-2 이해관계자 협의

- 입법예고('12.12.28~'13.1.17)를 통해 중소기업·정부부처와 협의 완료

3-3 규제의 실효성

-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예산낭비 및 정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